

2015년 상반기이사회 의결 결과

상반기 정기이사회 의결사항

- 일 시 : 2015년 3월 11일 10:30~12:10
- 장 소 : 공주의료원 회의실(3층)
- 출석임원 : 이사 8인, 감사 1인
- 의결사항

의결사항	주요내용	의결결과
2014. 결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결산액 수 익 : 25,120,938,613원 지 출 : 21,076,123,535원 차기이월액 : 4,044,815,078원 ○ 재정상태 자산 : 32,413,393,763원 부 채 : 20,614,991,317원 자 본 : 11,793,402,446원 ○ 손익계산 수 익 : 19,930,403,521원 비 용 : 21,126,729,349원 당기순이익 : △1,196,325,828원 ○ 지급능력 당좌자산 : 6,161,926,487원 유동부채 : 5,857,908,207원 차기이월액 : 304,018,280원 	원안가결
'15제1회추경예산(안)	<p>《예산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기정예산 : 28,876백만원 ○ 추가경정예산 : 28,070백만원 ○ 증 감 : △806백만원 <p>《증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 입 : 28,070백만원(806백만원 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예산 : 1,051백만원 감 (입원수익△1,041, 외래수익 135, 급식수익 △88, 기타의업수익 △57) - 이월금예산 : 245백만원 증 (현금이월금 606, 의업미수금 △361) ○ 세 출 : 28,070백만원(806백만원 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예산 : 534백만원 감 (재료비 △99, 관리비 △231, 의료부대비용 △50, 예비비△154) - 자본예산 : 18백만원 감(공기구비품 △18) - 이월금예산 : 254백만원 감(매입채무 △526 ,미지급금 272) 	원안가결

의결사항	주요내용	의결결과
정관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책수행 및 위탁운영과 관련 근거를 명확화(제4조) ○ 이사회(임원)의 구성인원을 6명이상 10명이하에서 8명 이상 12명이하로 확대(제7조) ○ 원장의 직무대행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공무원을 파견한 경우, 직무대행 순서에 우선하여 대행하도록 개정(제17조 제3항) ○ 파견 전공의 수련을 위해 진료부내에 교육연구부를 설치할수 있도록 근거 명시(제20조 제1항) ○ 충청남도지사와 공주의료원 원장은 임기동안 달성하여야 할 성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제19조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충청남도지사는 공주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충청남도지사는 원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함(제48조 제4항 신설) ○ 충청남도지사는 공주의료원이 폐업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 미리 공주의료원의 원장에게 입원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보조금·후원금등의 사용 실태 확인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제41조 및 제52조 신설)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채발행 및 사채 삭제 ○ 공주의료원의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결산서, 운영인력현황 등 세부 운영정보를 기관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도록 함(제38조 및 제38조의 2신설, 제56조신설)등 ○ 부칙 : 시행일 및 경과조치 <p>제1조(시행일) ①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 공포에 따라 개정되는 규정은 법률 시행일(2015. 7. 29)부터 시행하며, 그 외의 규정은 인가일부터 시행한다.</p> <p>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개정 정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2조(경과조치) 규정의 적용례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111호 일부개정 사항에 따른다.</p>	원안가결

의결사항	주요내용		의결결과					
회계규정 개정(안)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52 253 750 304">현행</th> <th data-bbox="750 253 1228 304">개정</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52 304 750 822"> <p>제61조(예산의성립) ① 예산은 당해연도 사업개시 15일 전까지 예산서를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p> <p>② 병원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병원은 보고된 예산에 대하여 도지사가 그 시정을 명할 때에는 지체없이 예산서를 수정하여야 한다.</p> </td> <td data-bbox="750 304 1228 822"> <p>제61조(예산의성립) ① 예산은 당해연도 개시전까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p> <p>② 병원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병원은 도지사가 예산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어 개선을 요구할 때는 예산서를 수정하여야 한다.</p> </td> </tr> <tr> <td data-bbox="352 822 750 1122"> <p>제62조(사업계획서) ① 병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년도 개선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p> </td> <td data-bbox="750 822 1228 1122"> <p>제62조(사업계획서) ① 병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년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	<p>제61조(예산의성립) ① 예산은 당해연도 사업개시 15일 전까지 예산서를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p> <p>② 병원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병원은 보고된 예산에 대하여 도지사가 그 시정을 명할 때에는 지체없이 예산서를 수정하여야 한다.</p>	<p>제61조(예산의성립) ① 예산은 당해연도 개시전까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p> <p>② 병원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병원은 도지사가 예산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어 개선을 요구할 때는 예산서를 수정하여야 한다.</p>	<p>제62조(사업계획서) ① 병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년도 개선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2조(사업계획서) ① 병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년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원안가결
현행	개정							
<p>제61조(예산의성립) ① 예산은 당해연도 사업개시 15일 전까지 예산서를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p> <p>② 병원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병원은 보고된 예산에 대하여 도지사가 그 시정을 명할 때에는 지체없이 예산서를 수정하여야 한다.</p>	<p>제61조(예산의성립) ① 예산은 당해연도 개시전까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p> <p>② 병원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병원은 도지사가 예산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어 개선을 요구할 때는 예산서를 수정하여야 한다.</p>							
<p>제62조(사업계획서) ① 병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년도 개선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2조(사업계획서) ① 병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년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진료성과급 지급규정 개정(안)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52 1135 750 1187">현행</th> <th data-bbox="750 1135 1228 1187">개정</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52 1187 750 1664"> <p>제5조(지급방법및시기) ① 지급기준 및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p> <p>1. 개인별성과급은 매월 진료 의사별 진료수입 및 통계중 일반의사는 행위료 수입을 공중보건과 의사는 총 의업수입을 기준수익으로 하며 지급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p> </td> <td data-bbox="750 1187 1228 1664"> <p>제5조(지급방법및시기) ① 지급기준 및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p> <p>1. 개인별성과급은 매월 진료 의사별 진료수입 및 통계중 일반의사는 행위료 수입을 공중보건과 의사는 총 의업수입을 기준수익으로 하며 지급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p> </td> </tr> <tr> <td data-bbox="352 1664 750 1868"> <p>제6조(사후관리) 이 기준에 의한 진료성과급 결정근거는 병원장 책임하에 타문서와 별도로 관리한다.</p> </td> <td data-bbox="750 1664 1228 1868"> <p>제6조(진료성과급지급관리) 이 기준에 의한 진료성과급 지급 결정액은 별도로 관리한다.</p> </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	<p>제5조(지급방법및시기) ① 지급기준 및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p> <p>1. 개인별성과급은 매월 진료 의사별 진료수입 및 통계중 일반의사는 행위료 수입을 공중보건과 의사는 총 의업수입을 기준수익으로 하며 지급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p>	<p>제5조(지급방법및시기) ① 지급기준 및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p> <p>1. 개인별성과급은 매월 진료 의사별 진료수입 및 통계중 일반의사는 행위료 수입을 공중보건과 의사는 총 의업수입을 기준수익으로 하며 지급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p>	<p>제6조(사후관리) 이 기준에 의한 진료성과급 결정근거는 병원장 책임하에 타문서와 별도로 관리한다.</p>	<p>제6조(진료성과급지급관리) 이 기준에 의한 진료성과급 지급 결정액은 별도로 관리한다.</p>	원안가결
현행	개정							
<p>제5조(지급방법및시기) ① 지급기준 및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p> <p>1. 개인별성과급은 매월 진료 의사별 진료수입 및 통계중 일반의사는 행위료 수입을 공중보건과 의사는 총 의업수입을 기준수익으로 하며 지급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p>	<p>제5조(지급방법및시기) ① 지급기준 및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p> <p>1. 개인별성과급은 매월 진료 의사별 진료수입 및 통계중 일반의사는 행위료 수입을 공중보건과 의사는 총 의업수입을 기준수익으로 하며 지급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p>							
<p>제6조(사후관리) 이 기준에 의한 진료성과급 결정근거는 병원장 책임하에 타문서와 별도로 관리한다.</p>	<p>제6조(진료성과급지급관리) 이 기준에 의한 진료성과급 지급 결정액은 별도로 관리한다.</p>							

의결사항	주요내용						의결결과																		
의료장비 취득(안)	○ 2015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국고지원사업 의료장비 취득 명세 <div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백만원)</div> <table border="1" data-bbox="379 483 1206 651"> <thead> <tr> <th>유형</th> <th>장비명</th> <th>수량</th> <th>구매사유</th> <th>추정 금액</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의료 장비</td> <td>전립선초음파등 5종</td> <td>5종</td> <td>신규,교체,추가</td> <td>210</td> <td>국비 105 도비 105</td> </tr> </tbody> </table>						유형	장비명	수량	구매사유	추정 금액	비고	의료 장비	전립선초음파등 5종	5종	신규,교체,추가	210	국비 105 도비 105	원안가결						
유형	장비명	수량	구매사유	추정 금액	비고																				
의료 장비	전립선초음파등 5종	5종	신규,교체,추가	210	국비 105 도비 105																				
의료장비 처분(안)	○ 의료장비 처분 명세 <div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천원)</div> <table border="1" data-bbox="363 819 1222 1043"> <thead> <tr> <th>유형</th> <th>장비명</th> <th>수량</th> <th>처분사유</th> <th>취득 금액</th> <th>취득 년도</th> </tr> </thead> <tbody> <tr> <td>의료 장비</td> <td>환자감시장치</td> <td>1대</td> <td>노후로 사용 불가</td> <td>15,300</td> <td>2001</td> </tr> <tr> <td>"</td> <td>Pulse oximeter</td> <td>1대</td> <td>"</td> <td>2,904</td> <td>1996</td> </tr> </tbody> </table>						유형	장비명	수량	처분사유	취득 금액	취득 년도	의료 장비	환자감시장치	1대	노후로 사용 불가	15,300	2001	"	Pulse oximeter	1대	"	2,904	1996	원안가결
유형	장비명	수량	처분사유	취득 금액	취득 년도																				
의료 장비	환자감시장치	1대	노후로 사용 불가	15,300	2001																				
"	Pulse oximeter	1대	"	2,904	1996																				

